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1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안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도시재생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전화 : 2286-6606, FAX : 2286-6918, E-mail : eiber99@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